

미성년자 입양 승낙서(13세 이상)

1.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

1. 구분		2. 성명	3. 주민등록번호	
미성년자 입양	양부로 될 자	박ㅇㅇ	_	
청구인	양모로 될 자	이 0 0	-	
양자로 될 자		김ㅇㅇ	-	
양자로 될 자의	친생부	김 🛆 🛆	_	
친생부모	친생모	윤□□	_	

2.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

위 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 김○○는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869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○○, 친권자 모 이□□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입양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.

20 . . .

구분	입양승낙(동의)인 성명	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(동의) 여부	서명 또는 날인
양자로 될 자	김ㅇㅇ	승낙함	
법정대리인 친권자 부	김ㅇㅇ	동의함	
법정대리인 친권자 모	0	동의함	

☞ 유의사항

- 이 서류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(단, 미성년자 입양 동의서에 작성명의 인의 인감증명서가 이미 첨부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).
- 단독입양인 경우,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명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절 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